일본의 일하는 여성 보육 지원

서문희
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위원

1. 서론

일찍이 저출산을 경험한 일본은 저출산 해소 대책으로 1994년 엔젤플랜을 발표한 이후 지속적인 저출산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정책 대상의 범위와 내용의 폭도 매우 넓어지는 정책적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출산력 관련 정책 초기부터 현재까지 꾸준하게 추진되는 중요한 정책의 하나가 여성의 일 · 가정 양립 지원이다.

일본 2000년 이후 남편 혼자 일하는 홑벌이 가정보다는 맞벌이 가정의 수가 점차 더 많아지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006년 중앙을 기준으로 홑벌이 가정이 851만이고, 맞벌이 가정이 1013만 가구이다. 그러나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의 취업률은 아직 낮아서, 여성의 연령별 취업률이 30대가 낮아지는 완만한 M자형을 나타내고 있다(日本 總務省, 2007). 막내 자녀가 0~3세인 어머니의 취업률은 31.0% 수준이고 4~6세는 50.3%로 증가한다(全國保育團體連絡會 · 保育研究所, 2008a).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한 욕구나 여성노동력 활용에 대한 기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취업률이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자녀 양육부담이 주요 요인으로 파악되며, 이는 곧 낮은 출산수준의 이유 중 하나가 된다. 1990년 이후 OECD 국가들은 여성 취업률과 출산수준이 정적인 관계를 보임(Sleebos, 2003)

여성의 일 · 가정 양립 지원 정책이 일본 저출산 대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이러한 관련성에 근거한다.

여성의 일 · 가정 양립 지원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이 글에서는 이 중에서도 특히 지역사회와 사업장에서의 보육 지원에 한정하여 전반적인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지역사회 보육

1) 보육서비스

가) 시설보육

일본의 보육시설은 전통적으로 국가 기준의 인가 보육시설과 인가외 시설로 구분되며, 이외 지방정부가 인정하는 보육시설이 있다. 인가보육시설은 2007년 12월 현재 22,764개소로 공영시설 52.0%, 민영시설 48.0%이다. 보육아동은 212만 600여명인데 민영시설이 52.3%로 공영시설보다 많다(표 1 참조). 일본의 민영보육시설은 몇몇을 제외하고는 모두 법인보육시설이다.

표 1. 일본 인가 보육시설 수 및 이용 아동 수(2007년 3월 현재)

(단위: 개소, 명, %)

구분	시설수		아동	
	수	비율	수	비율
공영보육시설	11,837	52.0	1,028,493	47.7
민영보육시설	10,927	48.0	1,140,543	52.3
계	22,764	100.0	2,126,036	100.0

자료: 日本 全國保育團體聯合會 · 保育研究會 編(2008). 保育年報

인가 외 보육시설은 2006년 말 현재 사업소내 보육시설 3,389개소, 기타 시설 2,169개소와 베이비호텔 1,620개소로, 약 18만 명의 아동이 보육 받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에 대기아동 해소 방안으로 지방정부에서 인증하는 보육실이나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시설인 인정어린이집이 확대되는 추세이고, 대기아동이 해소되는 지역은 이들 시설에 미취업모의 자녀도 입소가 가능하다.

이외 지방정부 법규로 별도의 기준을 낮게 설정하여 시설이나 가정보육 등을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제도권 밖의 보육서비스를 제도화하고 있다. 이 목적은 대기아동 해소와 이들 기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관리이다. 이렇게 제도화한 보육서비스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 수준이 인가보육시설과는 차별화되어서 보육료 수준은 높다(日本 全國保育團體聯合會 · 保育研究會, 2006).

일본 시설보육 제도의 특징 중 하나는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장보육 촉진사업, 아픈 아동, 회복기 아동보육 지원, 전업 주부 아동을 위한 서비스인 일시보육, 특정보육사업, 휴일보육시설, 22시까지 운영하는 야간 연장형 시설, 지역 자녀 영육지원 사업으로 일명 광장사업, 보육마마 지원 사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보육시설은 종일제 보육을 기본으로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취업모 자녀를 위한 시간제보육도 제공한다.

특히 야간보육 수요가 높아서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 시간대를 보면 24시간 아동이 전체 보육아동의 1%이고, 약 21%의 아동이 야간보육 아동이다.

2009년도 보육계획(안)을 보면 휴일 및 야간 보육시설을 2008년 1,135개소에서 1,310개소로 늘리고, 병아(病兒)보육시설도 2008년 1,307개소에서 1,833개소로 늘린다는 방침이다(全國保育團體連絡會 · 保育研究所, 2008b).

나) 가정 내 재택보육

가정 내 재택보육으로 보육모에 의한 가정보

육, 베이비시터, 에스쿠(エスク) 및 노동청에서 지원하는 지역네트워크인 가정지원센터(family support center)를 통한 보육 등이 있다.

가정보육제도는 보육자의 집 등에서 소수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형태를 총칭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으로서 요강, 규칙, 조례 등이 존재한다. 이는 1950년부터 인가보육소 보육을 보완하는 제도로, 주로 대도시 및 그 주변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치되어, 보육소 입소를 기다리는 저연령 대기아들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1999년에는 소자녀화대책임시특례교부금의 대상사업으로서 처음으로 국가보조금을 받았다.

정부 이외에 공공성을 띤 저렴한 비용의 재택 및 방문보육사업이 민간단체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데, 가정지원센터(Family Support Center)와 에스쿠(エスク) 등이 이에 해당된다. 가정지원센터는 노동성에서 1994년에 인구 5만 이상인 시 · 정 · 촌에 설치하여 아동을 맡기고자 하는 가구와 맡는 가정을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지역네트워크이며, 에스쿠는 1973년 3월 보육시설 화재사고 이후 뜻있는 여성들이 시작한 비영리 보육자 네트워크이다.

가정 내 보육의 또 다른 형태로 영리 베이비시터 회사를 통한 서비스로, 2006년 현재 155개 베이비시터 회사가 있으며, 약 23,000명의 아동이 이를 이용하다.

2) 보육시설 우선 이용 대상

일본 보육정책은 일하는 여성 중심이다. 아동복지법 제39조에서 보육 대상을 보육결여 아동으로 우선 정의한다. 아동복지법 제39조 제1항에서 보육소는 일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서 보육이 결여된 영아 또는 유아를 보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제2항에서 보육소는 일일보호자의 위탁을 받아서 보육에 결여된 아동 외의 아동을 보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취업모가 아니면 인가보육시설에는 입소하기 어렵다.

실제로 종일제 인가보육시설은 입소 순위로 보육이 결여되는 아동 우선 입소 정책을 유지한다. 일본의 종일제 보육시설의 경우 철저하게 취업모나 기타 가정 사정으로 보육이 필요한 아동에게만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취업모 중심의 선별적 보육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일본의 보육시설 입소 순위는 보호자와 가정환경의 다양한 요인을 모두 고려, 합산하여 지수화하여 점수가 높은 순서로 정한다. 지수는 대체로 보육 실시기준지수와 조정지수로 구분된다.

동경도 세다가야구의 경우를 보면, 실시기준지수는 출퇴근 및 재택 근로, 출산 · 질병 · 장애, 개호, 재해, 구직, 기타의 항목으로 유사한 체계로 항목별 10~50점을 부여하여 합산하는 점수제도를 적용한다(표 2 참조).

조정기준지수는 생활보호세대, 한부모세대, 부모 구직 중 세대, 휴직으로 일시퇴원 후 재입소 희망, 생계 중심자의 실업 등 다양한 조건에

표 2. 일본 동경도 세다가야구 보육소 입소 우선순위 고려 기본 요인

호	형	보호자(부모) 세목				기준	기간제
1	출퇴근 근무	외근 등	주 5일 이상 근무, 낮에 주 40시간이상			50	–
			주 5일 이상 근무, 낮에 주 37시간이상			45	
			주 4일 이상 근무, 낮에 주 35시간이상			40	
			주 4일 이상 근무, 낮에 주 30시간이상			35	
			주 3일 이상 근무, 낮에 주 25시간이상			30	
			주 3일 이상 근무, 낮에 주 20시간이상			25	
			주 3일 이상 근무, 낮에 주 16시간이상			20	
			주 3일 이상 근무, 낮에 주 12시간이상			15	
2	재택 근무	자영	주 5일 이상 근무, 낮에 주 40시간이상			50	–
			주 5일 이상 근무, 낮에 주 37시간이상			45	
			주 4일 이상 근무, 낮에 주 35시간이상			40	
			주 4일 이상 근무, 낮에 주 30시간이상			35	
			주 3일 이상 근무, 낮에 주 25시간이상			30	
			주 3일 이상 근무, 낮에 주 20시간이상			25	
			주 3일 이상 근무, 낮에 주 16시간이상			20	
			주 3일 이상 근무, 낮에 주 12시간이상			15	
		재택	주 4일 이상, 낮에 주 30시간 이상			20	
			주 3일 이상, 낮에 주 12시간 이상			15	
3	출산 질병 자애	출산	출산전후 보육이 필요			15	5개월
		질병	1개월 이상 입원			50	–
			가정내 요양	상시 와병		50	
				정신성	정신장애 3급 이상	50	
					기타	30	
				일반	안정 요	30	
					치료 요	20	
		장애	신체장애 1.2급, 청각장애 3급 이상, 정신장애3급이상 등			50	
			신체장애 3급, 청각장애 4급 이하,			30	
			신체장애 4급 이하			20	
4	개호	시설등	주 5일 이상, 낮에 주 30시간 이상			50	–
			주 5일 이상, 낮에 주 20시간 이상			45	
			주 4일 이상, 낮에 주 14시간 이상			40	
			주 4일 이상, 낮에 주 16시간 이상			35	
			주 3일 이상, 낮에 주 18시간 이상			30	
			주 3일 이상, 낮에 주 12시간 이상			25	

〈표 2〉 계속

호	형	보호자(부모) 세 목		기준	기간제
4	개호	자택개호	중증장애자 개호	50	–
			상시관찰(식사. 배뇨, 목욕 등)하다 필요시	40	
			기타	20	
5	재해	재해로 가옥 손상, 재해복구 등으로 보육불가		50	6개월
6	구직	취업 개업 예정	주5일 이상 근무, 낮에 주 37시간 이상	30	1개월
			주4일 이상 근무, 낮에 주 35시간 이상	25	
			주4일 이상 근무, 낮에 주 30시간 이상	20	
			주3일 이상 근무, 낮에 주 25시간 이상	15	
			주3일 이상 근무, 낮에 주 12시간 이상	10	
		구직	낮에 구직 이유로 외출	10	2개월
7	기타	취학 등	취학, 기능 습득 등으로 보육 어려움	※①	–
		부재	사망, 이혼, 행방불명, 구금 별거 등	50	
		기타		※②	

주: ①은 1번 준용, ②는 1–6번 중용
자료: 東京 世田谷區(2006) 保育サービスのごあんない.

표 3. 동경도 세다가야구 보육소 입소 조정지수

기준	환 경	지수
1	복지 대상 가구	+10
2	한부모(동거 친인척 없음), 고아	+20
3	한부모로 동거 친인척 있으나 보육은 하지 않음	+10
4	한부모 원거리 취업(동거 친인척 없음)	+3
5	1년 이상 취업 경험	+2
6	출산 및 육아 휴가	+5
7	동생 출산, 육아휴직으로 쉬다가 다시 입소	+20
8	보호자가 자택에서 보육	–6
9	보호자가 자택 이외에서 보육	–1
10	취업 내정자로 1개월 내 취업 개시	+3
11	취업 내정자로 2개월 내 취업 개시	+2
12	취업 내정자로 3개월 내 취업 개시	+1
13	보호자가 심신장애자 수첩 3급 이상	+5
14	보호자가 심신장애자수첩 4급 이상, 정신장애자 보건복지 수첩 소지	+1
15	동일세대내 중증 개호필요 세대원 거주	+2

〈표 3〉 계속

기준	환 경	지수
16	아동이 장애아로 시설이나 병원 다녀야 하므로 부모 취업이 어려운 경우	+10
17	형제자매 산욕기에 육아휴업 취득	–5
18	동거조부모(60세 미만) 무직으로 보완적 보육 가능	–6
19	타 형제자매가 입소 중	+5
20	보육실, 보육바마 등 타 서비스 이용하며 대기 중	+6
21	별거 친척이 돌보는 경우	+1
22	유치원을 다니는 경우	+1
23	특별한 사정으로 전원(이사, 전직, 거리 등)	+3
24	지역외 거주자	–5

자료: 東京 世田谷區(2006). 保育サービスのごあんない.

각각 점수를 부여하여 기본지수에 가산 또는 삭감하는 방법을 사용한다(표 3 참조).

순위가 동일할 경우에도 대비하여 4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1단계는 보육실시 기준 지수가 높은 세대, 2단계는 기다린 기간이 긴 아동, 3단계는 부재, 질병장애, 외근, 거택외 자영, 개호, 거택내 근로, 출산, 취업 내정, 취학, 구직 등에 유형간 우선순위를 부여, 4단계는 계층 저 순위이다.

보육시설 입소 뿐 아니라 연장보육 대상자 선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실시기준, 조정기준, 동일지수 우선순위를 적용하고 있다. 보육시설 입소 우선순위나 이용 우선순위를 철저하게 지키는 이유는 높은 종일제 보육시설 설치 기준으로 인한 보육시설 추가 설치 어려움에서 오는 공급 부족 현상에서 비롯된다. 지난 수년간 대기아동 감소 정책이 중요한 과제가 되어 왔다.

3) 정부와 부모의 보육비용의 분담 및 표준보육단가 산정

보육시설에서 입소 아동의 보호 최소한의 유지 등 보육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운영비[2]라고 하고, 이 비용은 보육단가제도를 통하여 일부를 보호자로부터 수납하는데, 이 과정에서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불하게 하고 그 차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보육부담 분담은 보육시설 운영비 중에서 1/2는 국가가, 1/2를 보육료로 징수하도록 하고, 국가 부담 중 1/2는 중앙정부, 1/4는 도도부현, 1/4는 시 · 정 · 촌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모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육료는 보호자 소득계층별로 차등화하는데, 중앙정부 지침은 소득계층을 7계층으로 나눈다. 생활보호법 피보호세

2) 예전에는 조치비라고 불렸음.

대와 시 · 정 · 촌민세 비과세대상(한부모 세대 등) 은 무료이다. 소득기준은 원칙적으로 전년도 세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고, 년간 2회에 걸쳐 보육료를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별도의 예산으로 추가로 지원하고 있고, 차등단계도 지역마다 다르다. 차등 단계를 중앙정부 기준을 적용하는 곳도 있으나 일부 지역은 30단계까지 적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결과로 많은 지역에서 실제로 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은 중앙정부 기준보다 크게 낮다. 예를 들어 요코하마시의 경우 총 보육시설 운영비 중 보호자 부담은 20.2%이다(표 4 참조).

또한 보육시설 정규 운영시간 이외 추가적인 보육이 필요한 아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한다. 보육시설의 연장보육을 차세대육성 자원대책 사업으로 규정하고 연장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시설에 교부금을 지원하고 있다. 2007년 기준으로 시설당 연 150만엔을 지원한다. 또한 휴일보육과 야간보육을 하는 보육시설에도 기본적인 시설 보조금과 아동별 보육료 가산금을 지원한다. 아픈 아동을 돌보는 보육시설에도 시설보조금을 지원한다.

3. 사업체 근로자 보육 지원

1)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일과 가정 양립 지원 정책 추진

일찍이 저출산을 경험한 일본은 저출산 해소 대책으로 1994년, 1999년 두 차례의 엔젤플랜에 이어 2002년 소자화대책 플러스원을 제시하고, 2003년에 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을 제정하였다. 이 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에 의하여 일본의 시 · 정 · 촌, 도도부현은 물론 특정 사업주와 일반 사업주도 근로자의 일 · 가정 양립을 위한 행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3] 행동계획

표 4. 일본 요꼬하마시 보육운영비: 2006

(단위: 억엔, %)

구분	국가 기준 운영비 295.9억(60.8%)					연장, 일시보육		보육수준 제고 부담		계
	법정부담			국가기준 보육료 징수						
	시립공설 민영분(시)	국	시	보육료	시	국	시	시	보호자*	
예산	32.6	61.4	61.4	99.2	41.4	9.8	10.2	170.4	1.2	486.7
비율	6.7	12.6	12.6	20.4	8.5	1.8	2.1	36.7	0.2	100.0

주: *는 시립보육소 시간연장 보육비 등임. 요꼬하마시는 지정도시로 가나가와현 지원금 없음.
자료: 日本 요꼬하마시(2006).

3) 기본이념으로 차세대육성지원대책은 부모, 기타 보호자가 자녀양육의 일의적인 책임을 진다고 하는 기본적 인식 속에서, 가정 책정지침에 따라서 근로자의 직업 생활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해 필요한 고용 환경 정비에 관한 행동계획을 책정하여 후생노동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행동계획에는 계획기간, 달성 목표, 내용 및 그 실시 시기가 포함되어야 한다. 당초 상시 고용하는 노동자 수가 301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사항이고 노동자수가 300인 이하 사업장은 권고사항이었으나, 2009년부터 행동계획 수립 의무사업장을 근로자 수 101인 이상 사업장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의무 일반 사업주가 제출하지 않는 경우, 후생노동대신은 기간을 정해서 제출을 권고할 수 있다.

사업주가 제출한 행동계획은 후생노동대신이 행동계획의 적절성, 기준에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이를 인정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지원 기구로 차세대육성지원추진센터와 지역협의회를 두도록 하였다.

행동계획을 수립한 사업주는 2007년 9월 현재 근로자 301인 이상 기업체 13,274개소 중 97.6%인 12,961 업체이며, 300인 이하 기업은 7,811개소가 행동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인정은 2007년 9월 현재 393개소가 신청하여 366개소이고 16개소가 심사 중이다. 행동계획은 21세기 직업재단에 등록하여 공개하고 있는데, 현재 350개 기업이 등록되어 있다.[4]

행동계획 작성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업주를 대상으로 기업 인정 및 표창제도를 실시한다.[5]

또한 정부가 지원하는 양육지원조성사업 내용은 육아휴업취득자 대체요원 확보 등 일곱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표 5 참조).

2) 사업소내 탁아시설 설치 · 운영 지원

노동자를 위한 사업소 내 탁아시설의 설치, 운영 및 증축 등을 실시하는 사업주 · 사업주단체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보육유구(장난감) 등 구입 비용의 일부를 보조한다.

가) 예산 지원 조건

(1) 사업소내 탁아시설 조건

사업소내 탁아시설은 아동복지법의 인가외 보육시설에 해당되므로 운영과 보육 내용 등은 도도부현(지역관할 시 · 도)의 보육행정의 지도 대상이 된다. 예산 지원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주, 사업주단체가 고용하는 노동자를 위하여 사업소 대지 내 · 근접지, 노동자의 통근경로(역빌딩, 통근에 편리한 장소), 노동자의 거주지 등에 설치하여 지속적인 이용이 전망될

외 장소에서의 자녀양육 의의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자녀양육에 따르는 기쁨을 실감할 수 있도록 배려해서 실시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였음.
4) 일본 노동후생성 홈페이지
5) 표창은 균등 · 양립 추진 기업에 후생노동성 대신 최우량상을 주고, 균등 추진 기업부분과 가족친화 기업부분으로 구분하여 각각 그 아래에 등급별로 3개씩의 상을 수여한다. 가족친화 기업부분 내용은 육아휴업, 단기근로, 탁아시설이나 비용 지원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일 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기업 문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5. 일본의 양육지원 조성 사업 내용

구 분	지원내용
육아휴업취득자 대체요원 확보, 육아휴업 취득자 원직복귀 사업주(대체요원 확보코스)	최초 중소기업 50만엔, 대기업 4만엔 지원, 이후 각각 15만엔, 10만엔 지원
육아 개호휴업 취득노동자 직장복귀 프로그램 실시 사업주(휴업 중 능력제고 코스)	근로자 1인당 최고 중소기업 21만엔, 대기업 16만엔 지원
미취학 아동 양육 근로자 단시간 근로 등 유연근로제도 실시 및 이용자 발생토록 한 사업주(육아기 유연근무 지원 코스)	육아휴업 , 단축근로, 탄력근무, 근무 시작과 종료 시간 조정, 소정아 노동 면제 등 조건별로 중소기업은 25~50만엔, 대기업은 10~40만엔 지원
사업소내 근로자를 위한 탁아시설 설치 사업자(사업소내 탁아사설 설치 운영 코스)	설치, 운영, 증축, 보육유구(교재교구, 장난감) 구입 비용 지원
육아 개호서비스 이용 근로자에 비용보조 사업주(보모 비용 등 보조 코스)	근로자가 이용한 육아 개호서비스 비용 중 사업자 부담액의 중소기업 1.2, 대기업1/3 지원, 상한은 1인당 30만엔 사업소당 360만엔, 5년 한도
양육지원제도 이용이 용이한 직장환경 정비를 계획적으로 추진한 사업주(직장풍토개혁코스)	진전 상태에 따라 50만엔 단위로 추가
남성의 육아 참여 촉진을 모범적으로 조직하여 실시한 사업주(남성근로자 육아참가 촉진)	1년에 50만엔, 2년 한도

자료: 日本 財團法人 21世紀職業財團(2008). URL:http://www.jiwe.or.jp

경우에 한한다. 둘째, 시설 규모는 영유아의 정원이 10인 이상, 영유아 1인당 면적은 7㎡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셋째, 시설은 아동복지시설 최저기준에 의거해 설치 · 운영되고, 전임 보육사에 의한 개개의 영유아의 생활과 발달에 상응하여 적절한 보육을 실행하고 있어야 한다. 넷째, 사업소 내 탁아시설의 이용자는 초등학교 취학 전[6] 아동을 양육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2) 수급할 수 있는 사업주 · 사업주 단체 조건

사업소 탁아시설 지원을 수급할 수 있는 사업주 · 사업주 단체 조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소 내 탁아시설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재)21세기직업재단 지방사업소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둘째, 지방사업소장의 인정을 받은 계획을 토대로, 사업소 내 탁아시설을 설치, 운영 및 증축을 실행하여야 한다. 셋째, 육아 · 간호휴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해 육아휴업 및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업에 준하는 조처 및 근무시간단축 등의 조처에 관하여 노동협약 및 취업규칙을 정하여 실행하고 있어야 한다. 넷째, 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 제12조를 기초로 일반 사업주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도도부현(관할 시나 도) 노동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상시 고용하는 노동자 수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주가 책정하고 신고해야 한다.

나) 지원 유형 및 지원 금액

사업소 내 탁아시설에 지원되는 비용에는 설치비, 운영비, 증축비, 보육유구 등 구입비가 있다.

설치비는 사업소 내에 탁아시설을 새롭게 설치하는 사업주 · 사업주단체에게 지급되며, 지원 항목은 신축 및 건물 구입비 등으로, 기존의 건물을 개증축하여 시설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단, 토지 취득에 요한 비용, 기존시설의 해체에 요한 비용은 제외되며, 1사업주 1시설에 한하여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중소기업사업주는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2/3(2007년 월1일부터 2010년 3월31일까지 조처), 대기업 사업주는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1/2이며, 한도액은 2,300만엔이다.

다음으로, 운영비는 사업소내 탁아시설의 운영을 새롭게 시작한 사업주, 사업주 단체로 1사업주 1시설에 한하여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중소기업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인건비)의 2/3(2007년 월1일부터 2010년 3월31일까지 조처), 대기업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인건비)의 1/2이다. 지급대상기간은 운영개시일로부터 5년이며, 1년간의 지급한도액은 운영의 형태, 시설의 현인원의 구분에 상응하여 적용된다.

증축비는 기존 시설을 정원 5인 이상의 증가, 증축면적 35㎡이상의 증축하거나 이용정원 2인 이상, 1명당 1.98㎡이상, 면적 3.96㎡이상의 안정실의 증축할 경우에 소요된 총 비용의 2분의 1을 지급하며, 한도액은 1,150만엔이다. 또한 기존의 일정 요건을 갖춘 시설을 한도액 2,300만엔으로 5인 이상의 정원증축 및 건축면적 35㎡이상 넘는 개축을 했을 경우에는 이에 소요된 비용에 개축 후에 사업소내 탁아시설의 정원에 대하여 증가한 정원의 비율[7]을 더하여 산출한 금액의 1/2을 지급한다.

보육유구 등 구입비는 사업소 내 탁아시설의 보육유구(장난감)등을 구입한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에 지원되며 한도액은 40만엔이다. 시설의 보육유구 등[8]의 구입에 요한 액수로부터 10만엔을 공제한 금액을 지원하며, 수급은 5년에 1회에 한한다.

다) 직장보육설치 실태

2006년 말 현재 사업소 내 보육시설은 3,389개소로, 2,126개소는 병원 내 시설이고 1,263개소는 기타 사업체가 설치한 시설이었으며, 아동수는 48,000여명 수준이다. 전체 보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동시설 수로는 1.5%, 아동수는 약 2.4% 수준이다.

6) 해당 아동이 6세가 되는 날이 포함되어 있는 연도의 3월 31일까지로 함.

7) (개축 후 시설의 정원-기존 시설의 정원)/개축 후 시설의 정원

8) 일품의 단가가 원칙적으로 1만엔 이상, 총경비 20만엔 이상의 것으로 지방사무소장이 인정한 것으로 함.

이와 같은 사업소 보육시설의 규모나 이용 아동수는 2003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다. 직장보육시설은 아동복지법의 인가외 보육시설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다.

2007년 일본 사업소 근로조건 총합조사 결과에 의하면 조사된 4,178개 사업소 중 0.6%에 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2.0%가 베이비시터 이용권을 포함하여 보육비용을 보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세기 직업재단에 행동계획을 등록한 350개 사업소 중에서도 보육소 운영 기업은 4개소에 불과하다.

표 6. 일본의 사업소 내 보육시설수와 아동수

(단위: 개소, 명)

구분	2005		2006	
	시설수	아동수	시설수	아동수
전체	3,371	47,752	3,389	47,775
병원 내	2138	35,284	2,126	34,963
기타 사업소	1,223	12,468	1,263	12,812

자료: 日本 全國保育團體聯合會 · 保育研究會 編(2006, 2007). 保育白書

표 7. 일본의 연도별 사업소 내 보육시설수와 아동수

(단위: 개소, 천명)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시설수	3,455	3,561	3,549	3,603	3,622	3,534	3,445	3,378	3,371	3,389
아동수	52	53	54	54	53	52	50	49	48	48

자료: 日本 全國保育團體聯合會 · 保育研究會 編(2007). 保育白書

표 8. 일본의 육아 · 개호 지원 사업소 비율(2007)

(단위: %)

구 분	육아휴업	탁아시설	육아보조(베이비시터 보조금 포함)	개호휴업, 간호휴가
전체	40.5	0.6	2.0	30.9
1,000명 이상	56.7	2.2	15.4	57.4
300~999명	47.8	1.4	5.7	44.6
100~299명	47.2	0.9	2.8	39.1
30~99명	37.1	0.4	1.0	26.1

자료: 日本 厚生勞動性(2008). 2007年 就勞條件總合調査 結果. URL:http//www.mhlw.go.kr

3) 육아 개호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가) 사업소 보육서비스 비용 지원

사업소가 근로자의 육아 개호서비스 이용 비용을 보조하는데, 민간시설 이용 비용 지원하거나 사업소 내에 설치한 보육시설 인건비나 건물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것, 취업규칙 등에서 사업주가 계약을 하고 실제로 이를 제공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되며, 베이비시터회사와의 계약도 포함된다. 이러한 지원에 대하여 정부가 근로자 육아 개호서비스 비용 중 사업자 부담액의 일부를 부담하는데, 중소기업은 1/2, 대기업 1/3을 지원하며, 상한은 연간 1인당 30만엔, 사업소당 360만엔으로 5년 한도이다.

나) 베이비시터 비용 지원

베이비시터 이용에 대한 근로자 지원은 일본전국베이비시터협회(All-japan Babysitter Association)[9]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베이비시터 협회 지원사업은 베이비시터 육아지원사업, 쌍생아 가정 육아지원사업, 산전산후 육아지원사업이 있다.

베이비시터 육아지원사업은 협정을 체결한 사업주나 대상보육소 등에 근무하는 직원이 베이비시터를 이용할 때 1일 1회 1,500엔, 또는 2,000엔의 할인권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쌍생아 가정 육아지원사업은 다태아 부모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로 1일에 9,000엔을 보조하고, 산전산후 육아지원사업은 산전산후 휴가 기간 동안 임산부 건강검진, 산욕기 건강 문제 등으로 베이비시터를 이용할 때 1일 1,500엔을 보조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사업은 아동수당법에 의거하여 정부가 종업원의 취로와 관련된 재택보육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에 베이비시터, 가정지원센터(FSC), 가정보육제공자가 모두 포함된다.

베이비시터 비용에 대한 지원 흐름도는 [그림 1]과 같다. 먼저 후생노동성에서 재단법인인 어린이미래재단을 지원하고 어린이미래재단은 베이비시터 육아지원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자금을 조성하며, 어린이미래재단은 사업주 또는 해당 보육소와 협정을 체결하고, 베이비시터협회는 사업주와 협정을 체결하여 협정 기업에 1매당 1,500엔짜리 재택보육 할인권을 수수료 150엔을 받고 납입하며, 베이비시터 회사와는 계약을 체결한다.

한편 베이비시터협회와 협정을 체결하여 할인권을 받은 기업이나 해당 보육소는 종업원에게 재택보육 할인권을 교부하고, 할인권을 받은 종업원은 재택보육서비스를 받으며 할인권을 제한 비용을 지불한다. 할인권은 협회를 통하여

9) 이 협회는 베이비시터회사들의 협회로 1989년에 설립되어 베이비시터 회사 125개가 가입하고 있음. 회사들은 연 20만엔에서 30만엔 정도의 가입비를 내고 있으며, 협회에서는 광고나 베이비시터에 관한 정보제공 이외에는 전혀 도움을 주지 않고 있어서 일부 회사들은 탈퇴하려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음.

그림 1. 일본 베이비시터 비용 지원 사업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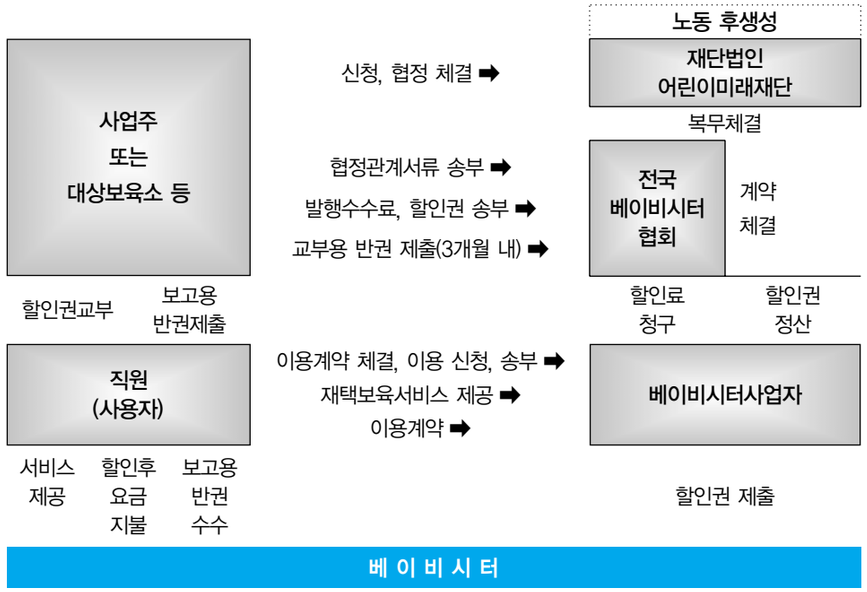

자료: 日本 財團法人 こども未來財團(2007). ベビーシッター育兒支援事業 實施要領

재단법인 어린이미래재단이 지원금으로 정산하게 되는 것이다. 이 할인권은 종업원 1인당 하루에 1장을 사용할 수 있다.

협정 대상 및 규모를 보면, 기업 규모에 따라 최소 1,200매부터 최대 4,800매를 지원하고, 보육소는 개소당 1,200매를 지원한다. 지원 단가는 사업주는 1일 1회 1,500엔이고, 연장보육종사자는 2,000엔으로 차등을 둔다.

표 9. 일본 베이비시터 이용 할인권 발행 한도

(단위: 매)

구분	발행 한도	할인액 한도
직원수 1,000명 이하 사업주	1,200	사업주 1,500엔
직원수 1,001~2,000명 이하 사업주	2,400	연장보육종사자 2,000엔
직원수 2,001~3,000명 이하 사업주	3,600	
직원수 3,001명 이상 사업주	4,800	
대상보육소 1개소 당	1,200	

자료: 社團法人 全國 ベビーシッター協會(2006). 社團法人 全國 ベビーシッター協會 15年의 あゆみ

표 10. 일본 베이비시터 이용 할인권 이용한 육아지원사업 실적

(단위: 개, 매, 천엔)

연도	협정기업수	발행매수	정산매수	조성금액
육아지원사업				
1994	131	8,085	4,268	6,402
2004	880 (2)	127,269 (235)	89,982 (208)	134,973 (416)
2005	974 (1)	139,652 (230)	96,538 (168)	144,807 (336)
2006	1,016	151,898	1,000,843	–
쌍생아육아지원				
2004	880 (2)	2,418	1,593	14.818
2005	974 (1)	2,638	1,761	16,542
2006	1,016	2,742	1,804	–
산전산후육아지원				
2004	880 (2)	148	109	163
2005	974 (1)	172	103	155
2006	1,016	172	116	–

주: ( )는 연장보육 대상분으로 별도임. 쌍생아육아지원과 산전산후육아지원 사업은 협정기업수 통예 부재.
자료: 社團法人 全國 ベビーシッター協會(2006). 社團法人 全國 ベビーシッター協會 15年의 あゆみ

육아지원사업은 1994년에 시작한 이래 계속 규모가 확대되어 왔다. 2006년 통계로는 전국에서 1,016개 기업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조성 금액은 1억 448만엔이다. 발행된 할인권이 모두 사용되지는 않는데, 발행 대비 정산 비율은 2006년 66.5% 정도이다.

4. 일본 일하는 여성 보육지원정책의 함의

일본의 보육지원 정책 사례는 부모들의 다양한 요구에 사각지대 없이 골고루 부응하려는 세분화된 정책이 특징으로 나타난다. 지역사회보육은 종전에는 일반 취업모 중심의 정책이었으나, 저출산 대책이 전개되어 가면서 취업모를 위하여 야간보육, 재택보육 등으로 서비스가 보다 다양화하고 강화되어 가고 근로유형의 다양화에 부응하여 오전반, 오후반, 주 2~3일 이용 등 보육서비스의 탄력성 증진 정책이 시도되어 왔다. 일반 부모를 위하여 광장사업, 지역육아지원센터와 같은 일반 부모지원 정책도 추진되고 있다. 기업체에서의 사업소 보육소 설치, 보육비용 지원 등 직장보육서비스 지원의 비중은 크지 않다. 일 · 가정 양립지원의 한 수단으로 채택되고는 있으나 육아휴업, 탄력근무제 등의 수단에 비하여 그 비중은 매우 낮다. 이는 공적 보육체계, 차등보육료 등 보육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정책에 대한 시사점은 우선 수요자가 요구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선택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기업이 국가 정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려면 이를 어느 정도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지원도 수반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日本 厚生勞動性(2008). 2007年 就勞條件總合調査 結果. URL:http//www.mhlw.go.kr

日本 總務省(2007). 2007年 勞動力調査 結果

日本 全國保育團體聯合會 · 保育硏究會(2006). 保育白書.

日本 全國保育團體聯合會 · 保育硏究會(2008) 保育白書.

日本 全國保育團體聯合會 · 保育硏究會(2008a). 保育情報 No.384. 2008年 10月

日本 全國保育團體聯合會 · 保育硏究會(2008b). 保育情報 No.384. 2008年 11月

東京 世田谷區(2006) 保育サービスのごあんない.

日本 財團法人 こども未來財團(2007). ベビーシッター育兒支援事業 實施要領.

日本 社團法人 全國 ベビーシッター協會(2006). 社團法人 全國 ベビーシッター協會 15年의 あゆみ

Sleebos, Joelle E(2003). Low Fertility Rate in OECD Countries: Facts and Policy Responses. OECD.